

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

제안 설명

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김 인제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」에 대해 제안
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이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
필요한 사항과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활동
에 수반되는 주거지원 등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에 필요
한 사항을 정한 제정안으로, 총 11개의 조문으로 이루
어져 있습니다.

먼저, 청년의 범위를 “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자”
로 하여 청년의 주거 정책 대상을 대학생, 사회초년생,
취업준비생, 신혼부부 등으로 하였으며,

둘째, 주거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청년층만을 대상으
로 하는 “청년 주거기본계획”의 수립을 의무화하고,
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
록 함으로써, 청년주택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급
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.

셋째, 최저주거수준 미달하는 청년가구, 준주택 및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특성,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, 정책 수립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넷째,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및 임대료 등 금융지원, 청년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주택 공급과 청년주거 관련 종합정보 제공 등 청년주거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청년층이 원활하게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주거 보장 기회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.

다섯째, 청년 주거사업에 동참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로 청년세대의 수요 파악과 연령별 소득대비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이 조례안은 청년주택 공급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, 청년주거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소와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